

의장



제2015 - 5차 신용정보협의회 의사록

일 시 : 2015. 9. 24.

장 소 : 서면 의결

의결사항

【제의안건】

1.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2.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작성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제2015-5차 신용정보협의회 안건

2015. 9. 24.

제2015-5차 신용정보협의회 안건

구 분

의 안 제 목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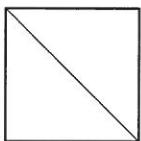
의결안건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2015. 9. 24.

신용정보협의회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년 월 일	2015. 9. 24. (제2015 - 5차)

의 제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의 결 년 월 일 : 제1호
2015 - 5차
2015. 9. 24.

요 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불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 * 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집중
② 자산유동화에 따라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채권을 관리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집중 업무 수행
③ 신용거래정보 집중시기를 10일에서 7영업일로 변경
④ 표준 동의서 폐지

붙 읍 : 1.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1부.

2.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대비표 1부. 끝.

제 출 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윤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붙임1)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1.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신용정보 집중

가. 개정취지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체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전문 복임2참고)

6. 공공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한
		대상주체	등록시기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따른 공공기관 제23조제2항에 체권을 매입한 정보 기관 중 해부조정 및 체결한 정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 중 해부조정 및 체결한 정보	○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청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 중 해부조정 및 체결한 정보	○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록 시기는 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가 청탁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 구체적인 등록 및 해제 기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로부터 첨부3과 같은 요청이 있어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요지

○ 공공정보 신설

- 규약 분문 제11조 【공공정보】 ①에 아래와 같이 신설
17.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을 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거래처 및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

○ 관리기준 세부사항

- 「관리기준」 5. 공공정보에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 신설

코드	등록사유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을 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 한 거래처	- 채무 조정 약정 취소(실효)시 제 등록(등록 사유 발생일로 한다)	- 채무 변제 완료 - 채무 조정 약정 체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1701
		-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 발생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 채무조정 약정 취소(실효) - 채무 조정 약정에 따른 변제 완료 - 2년간 변제 약정에 따라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시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 발생시	1702	

다. 시행일 : 2015. 12. 1.

2. 자산유동화에 따른 채권자 변경시 신용정보 집중

가. 개정취지

- (감사원 자체) 금융감독원-감사원 은행연합회 공동검사(“15.4.1.~28.) 결과, 감사원에서 자산유동화 대상 회사채 연체 정보 집중과 관련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를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채권자가 SPC로 변경된 경우에는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6]에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 규정* 신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전문 복임2참고)

1. 식별정보(생략)

- 1)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등록 정보 보유기관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 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하기반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삽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삽제 <2007.8.3.>

자. 삽제 <2007.8.3.>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예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
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하. 삽제 <2012.12.18.>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윤용·관리하는 자
나.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
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삽제 <2014.12.30.>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
의 재산권을 말한다.

나. 개정요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 수행

제18조【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집중업무】	제18조【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집중업무】
보. 집중 방식 변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 집중 방식 변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 집중업무를 수행한다.

다. 시행일 : 2015. 12.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
문화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3. 신용정보집중시기 변경(10일→7영업일)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시기가 10일에서 7영업일로 개정(전문 불임1침고)*되어 동 시장률을 반영하고자 함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2. 거래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생 략)	해당개인 (생 략)	등록시유발생 일로부터 7영업일내 보유기관	생 략

나. 개정요지

- 「신용거래정보」 중 「개설 발급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의 등록시기 변경
 - 10일 → 7영업일

다. 시행일 : 2015. 10. 1.

4. 표준동의서 제도 폐지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 표준동의서 폐지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는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의 표준 동의서 폐지 필요

*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② 영 제28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별법 제33조제1호에 따라 해당 개

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

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

용정보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 비밀번호

호"란 다음 각 호의 비밀번호를 말

한다.

1. 일회용비밀번호(OTP)

2.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

카드의 특정번호

제36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김

<식>

丑陋的蒙古族是怎样被同化的

(2) 電子

- 11 -

3. 다음 표를 읽고 표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표에 표기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 표를 완성하라.

2. 다음 표를 보고 표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표에 표기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 표를 완성하라.

1. 다음 표를 읽고 표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표에 표기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 표를 완성하라.

* 『한국의 철학과 문학』 제2권, 1991년 11월호, 111~120쪽.

○ 《한국의 철학과 예술》[한국학회] 2016. 3. 12. 출판 | 한글판

叶. 日期 : 2016. 3. 12.

제10(금융)법률조회 온라인 학습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는 다른 독립적인 예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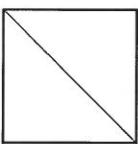
○ 現代語彙

۷۰

本项目将通过“互联网+”思维，结合大数据、云计算、物联网等技术，构建一个集数据采集、分析、决策、执行、反馈于一体的综合管理平台，实现对整个项目的全生命周期的智能化管理。

제작일자 (날짜)	제작자 (성명)	제작장소 (주소)	제작업체 (법인명)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문서 (제작문서)	제작설명 (설명)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p>1) 제작내용</p> <p>2) 제작내용</p> <p>3) 제작내용</p> <p>4) 제작내용</p> <p>5) 제작내용</p>									
<p>(설명)</p>									
<p>3. 내용 등록 내용 ~ 4. 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5) 제작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6) 내용 등록 내용 ~ 7) 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8) 내용 등록 내용 ~ 9) 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10) 내용 등록 내용</p>									

제작일자 (날짜)	제작자 (성명)	제작장소 (주소)	제작업체 (법인명)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문서 (제작문서)	제작설명 (설명)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p>1) 제작내용</p> <p>2) 제작내용</p> <p>3) 제작내용 (설명 등록)</p>									
<p>(설명)</p>									
<p>4) 제작내용 등록 내용 ~ 5) 제작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6) 제작내용 등록 내용 ~ 7) 제작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8) 제작내용 등록 내용 ~ 9) 제작내용 등록 내용 (설명 등록)</p>									
<p>10) 제작내용 등록 내용</p>									



번 호	회 의 차 수	일 자
제 2 호	제2015 - 5차	2015. 9. 24.

의 제 :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요 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별법과 같이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본 임 : 1.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1부.
2.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전문 1부. 끝.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안건

제 출 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윤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동법 부칙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 2. (생략)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붙임)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1. 제정 취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주체가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변경된 바,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제·개정한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을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고자 함.

* 개정법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정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 전까지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담당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정 내용

○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 하고, 주요 사항은 현행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체계 유지

*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 생략) 등

3. 시행일 :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일로 함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 2015.

④ 신용정보 교육, 교재발간 및 포상

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확충

⑥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구입 및 특별용역비

⑦ 기타 신용정보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기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누락·지연·거짓 등록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및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부과기준】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에 대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법령, 신용정보협의회 및 관련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신용정보의 누락·지연·거짓 등록 등에 대하여 "(별표 1) 제재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제재금 중 가장 큰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1. '지연, 누락 및 고의·부적절'에 대한 제재금과 '연체등정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확'에 대한 제재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2.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대상인 신용정보를 해지·해제로 처리하는 등 신용정보를 부작정하게 처리한 후 정확하게 바로접는 과정에서 복수의 제재금이 적용되는 경우

제4조【제재금 용도】 제3조에 의거 침수한 제재금은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용도는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경비로 사용한다.
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②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행사 개최
③ 신용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제5조【이의신청】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매월단위로 신용정보의 누락·지연·거짓 등록·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제재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증명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제재금 부과확정 통보를 하며, 제재금 부과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모든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무처리】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제5조의 이의신청 등 제재금 부과 관련 사무 처리를 각 협회 또는 중앙회를 통하여 업권별로 일괄처리 할 수 있다.

제7조【부과세계】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제재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규 가입, 파업, 파산·정산 등이 발생한 경우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오류 통보(기한내에 전송)된 전을 제집증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5.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의 경우
6. 회생·파산 등과 관련된 경우
7. 채권의 양수도와 관련된 경우
8. 기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등록·해지·해제 및 등록취소 오류와 관련된 경우
 - 나. 등록금액 또는 사유발생일 오류와 관련된 경우
 - 다. 특수채권 번임과 관련된 경우
 - 라.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 마. 거래 취소가 발생한 경우

비. 경미한 사항

사.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정확도 체고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일괄정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제재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부과제외】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 여부에 따른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증 금융질서 문란정보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기록부터 4호 나목의 정보

제9조 【제재금 부과 최고금액의 설정】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의·증과

실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의 신용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동일한 원인행위 별로 최고금액을 설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②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전항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신용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 제재금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구 분	집 중 기 한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다만, 제재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하지 않는 경우 부과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가계당좌 및 담작예금 개설·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신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 개인기밀 및 법안에 관한 대출(연체포함), 자금 보증, 유기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 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말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월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 신용농협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집중

(별표 1)

제 2 금 부 과 세 부 기 준

2. 자연 및 누락 기간별 부과기준

(1) 자연(주) 기간별 부과기준

구분	대상	자연일수	제 세 금	사유코드	비 고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2만원	111		
	90일 이내	4만원	112	발생내역별 부 과	
	180일 이내	6만원	113		
	180일 초과	8만원	114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2만원	121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90일 이내	4만원	122	정보전별 부 과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6만원	123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180일 초과	10만원	124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90일 이내	4만원	122	정보전별 부 과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90일 이내	4만원	123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180일 이내	6만원	124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180일 초과	8만원	125		
- 개인기업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저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체무보증 및 체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 (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100억원 초과	10만원	224		
- 개인기업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저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체무보증 및 체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 (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10억원 이하	2만원	231	등록대상 부과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0억원 이하	5만원	23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00억원 이하	20만원	234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50억원 이하	2만원	241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00억원 초과	10만원	24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00억원 이하	244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4주 연속	2만원	251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8주 연속	5만원	25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2주 연속	20만원	253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12주 초과 연속	고의 · 부적절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6개월 초과	10만원	134		

※ 주1) 자연 [집중 대상 및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집중기한 경과] 처리+집중기한 경과

- 신용정보의 집중 대상 및 내용은 정확하나 집중기한이 경과하여 처리한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금융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2. 누락(주) 기간별 부과기준

(2) 누락(주) 기간별 부과기준

구분	대상	누락일수/금액	제 세 금	사유코드	비 고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4만원	211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해제	90일 이내	6만원	212	발생내역별 부 과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8만원	213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해제	180일 초과	10만원	214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4만원	221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90일 이내	6만원	222	정보전별 부 과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180일 초과	10만원	224		
- 개인기업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저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체무보증 및 체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 (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10억원 이하	2만원	231	등록대상 부과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0억원 이하	5만원	23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00억원 초과	20만원	234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50억원 이하	2만원	241	등록대상 부과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00억원 초과	10만원	24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00억원 이하	244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4주 연속	2만원	25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법인별)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8주 연속	5만원	252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2주 연속	20만원	253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12주 초과 연속	고의 · 부적절			
- 개인기업 및 법인별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6개월 초과	10만원	134		

※ 주2) 누락(집중 대상 및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집중기한 경과 + 비자발적 처리)

- 신용정보의 집중 대상 및 내용은 정확하나 집중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종합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 등에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종합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 등에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및 "사유발생일을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하게 처리 후" 가록보존 기간 만료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3. 부정화에 따른 부과기준

(1) 등록 내용의 부정화^{주3)}

구분	대상	건수	제세금	사유코드	비고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자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범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기업어음거래 정보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정보등록의 부정화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자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범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기업어음거래 정보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정보등록의 부정화	5건 이하 10건 이하 20건 이하 50건 이하 100건 이하 200건 이하 500건 이하 1,000건 이하 1,000건 준과	3만원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연체등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화	- 연체등 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2만원	411	정보전별 부과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 명좌) 예금 개설정보 사유발생 일의 부정화	- 해당 신용정보의 제재금 대상 기간을 산정 하여 「자연, 누락 및 고의·부작절」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정보전별 부과	

구분	대상	건수	제세금	사유코드	비고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자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범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기업어음거래 정보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정보등록의 부정화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자금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범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기업어음거래 정보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정보등록의 부정화	5건 이하 10건 이하 20건 이하 50건 이하 100건 이하 200건 이하 500건 이하 1,000건 이하 1,000건 준과	3만원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연체등 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화	- 연체등 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2만원	411	정보전별 부과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 명좌) 예금 개설정보 사유발생 일의 부정화	- 해당 신용정보의 제재금 대상 기간을 산정 하여 「자연, 누락 및 고의·부작절」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정보전별 부과	

(2) 고의·부작절⁴⁾

구분	대상	제세금	사유코드	비고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 · 사유발생일을 제작(가게당좌)만을 포함)으로 처리한 경우 예금 개설정보 등록, 해 지 · 해제 등외 고의 · 부작절	- 고의로 신용정보를 지연 · 누락 처리한 경우 및 당하지게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 · 사유 발급정보, 당좌(가게당좌)만을 포함)으로 처리한 경우 예금 개설정보 등록, 해 지 · 해제 등외 고의 · 부작절	100만원	511	발행내역 부과
- 대상기업 제작정보를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등록 누락 하는 경우 「대상기업 제작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최근 1년 내에 사실과 달리 3회 이상 반복하여 등 록 · 해지한 경우	- 고의로 신용정보를 지연 · 누락 처리한 경우 발생일을 오류 등록 · 정정하는 경우 '해 · 해제 · 등록취소 · 처리한 경우 신용정보의 등록, 해지 · 해제 · 등록취소, 정정 등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청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회원(제재대상 통보, 이행실태 조사실시 등. 이하 동일) 및 안내(비정규파일 송신방법으로 처리) 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비정규파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 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제작정보 등록을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누락하는 경우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 · 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 · 사유발생일을 등록 · 정정하는 경우 '해 · 해제 · 등록취소 · 정정 등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청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비정규파일 송신방법으로 처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 (비정규파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제작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사실과 달리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반 복하여 등록 · 해지한 경우	100만원	512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주4) 고의·부작절 [고의로 신용정보를 부작절하기] 처리]

- 고의로 신용정보를 지연 · 누락으로 처리한 경우
- 고의로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정정 등등록금액 · 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 · 정정하는 경우 '해 · 해제 · 등록취소 ·
처리한 경우
- 신용정보의 등록, 해지 · 해제 · 등록취소, 정정 등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청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회원(제재대상 통보, 이행실태 조사실시 등. 이하 동일) 및 안내(비정규파일 송신방법으로 처리)
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비정규파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
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제작정보 등록을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누락하는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 · 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 · 사유발생일을
등록 · 정정하는 경우 '해 · 해제 · 등록취소 · 정정 등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청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비정규파일 송신방법으로 처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
(비정규파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제작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사실과 달리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반
복하여 등록 · 해지한 경우

※ 주3) 등록 내용의 부정화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의 등록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연체등 정보증명 등록금액의
부정화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신용여정보 및 기업어음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사유발생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연체등 정보증명 사유발생일의 부정화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신용공여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의 식별번호, 계정과목코드, 등록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기업신용
공여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 별로 각각 건수를 산정하여 적용)

(별표 2)

제3급 부과 베이지기준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신규 가입	종합신용정보증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영업장지 후 재 개시하는 기관 포함)	- 신규가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신규가입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111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파업 등	직원의 파업 및 휴업으로 인한 경우	- 재직인 고지서 확인 후 배제 - 정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112
인·허가 청소·영업장지, 파산, 해산, 청산	해당 금융기관이 인·허가취소, 영업장지, 파산, 해산, 청산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113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또는 통신장에서 발생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통신장에 통신장 번역,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 체계구축(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 시스템 체계구축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정예발생일 등(이하 “적용일 등”이라 함)으로 부터 3월 이내 조치	211.
온라인 청보가 전송된 경우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으로 인하여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 해당일자에 종합신용정보증기관으로서 발송한 전송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적용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212

*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일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적용일 등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제한) 조치, 단, 기업신용공여 정보(기업금융거래정보 포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오류 통보	신용정보 등록(기한내 접수)시 종합집중기관으로부터 오류 통보된 건을 제등록한 경우	- 오류통보 내역 확인 후 배제 - 대상기업체정보의 경우 각각의 제3급 부과대상기간(4주, 8주, 12주)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치	311
정보등록 기준 변경	관계법령의 정보등록기준 변경과 관련된 신용정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정보등록기준 변경사항 확인 후 배제 - 등록기준 변경사항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411

5.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기 등록정보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11
식별번호 누락	기업에 대한 정보등록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등록번호로 일괄 등록하여야 하나 두 번호 중 하나의 번호로만 등록한 후 미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시 이를 하나를 누락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금융거래정보 포함)는 제외	512
대상기업체 정보 누락 등	임의단체 및 조직변경 법인의 식별정보 오류, 해외원정지법인정보 확인 지역, 산속증여, 증명서 분실, 세무승계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변경자연이나 세출 지연의 경우	- 원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자료 확인 후 배제 - 세제대상기준으로부터 2주 이내 조치	513

6. 회생·파산 등

가. 파산면책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연체등정보,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차오 등록(최초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 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연체등정보,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차오 등록(최초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 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지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를 차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연체등정보,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차오 등록(최초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지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를 차오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지되어 기록 보존기간이 만료하거나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가 차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단, 기 해지되어 기록보존증인 연체등 정보가 차오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면책결정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1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면책결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2
파산면책 취소에 따라 연체등정보, 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파산면책취소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파산면책취소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3
기타 파산면제와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4

나. 회생인가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일괄 해제된 연체등정보 중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차오 등록(최초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차오 등록(최초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기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만료하거나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회생계획에 포함)가 차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단, 기 해지되어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가 차오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번제 계획인가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차오 등록(최초등록)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기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만료하거나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회생계획에 포함)가 차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단, 기 해지되어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가 차오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번제 계획인가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622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 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 등을 면책일로 소급 해지한 경우	- 회생계획 면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회생계획 면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3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인기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4
회생계획 인가 폐지로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회생계획 폐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회생계획 폐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5
기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6

다. 신용회복지원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신용회복지원의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등정보증 신용회복지원 혐의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등정보증 신용회복지원 혐의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31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차오 등록(최초등록) 후 등 사실을 인지 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라 기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만료하거나 기록보존증 인 연체등정보(지원대상계약에 포함)가 차오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등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기체제되어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가 차오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32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33	
신용회복포리워크이웃 포함 지원결정이 실효 되거나 반송되어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하여 계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실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34	
기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35	

라. 개별기관 위크아웃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배제 요건	사유코드
개별기관 위크아웃 등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금 납입 후 연체등정보를 약정체결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 분할상환 약정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납입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41
개별기관 위크아웃 등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개별기관 위크아웃등 실현에 대한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 분할상환 약정 취소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납입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42
증명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되었으나 제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제등록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부터 1월 이내 조치	651
증명서	천재지변 천재병 및 기타 사유로 일정한 대상지의 연체등정보를 등록유예 하였다가 추후 등록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로 확인 후 배제	- 관련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61
증명서	학자금 대출, 기업구조정협약, 신용위험 평가협약, 기업구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따른 등록 유예 대상인 연체등정보를 등록취소("77") 하거나 추후 제등록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로 확인 후 배제	- 등록유예증명서일 또는 등록유예기간 증표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62

7. 채권의 양수도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채권의 양수	양수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711
채권의 양도	채권 양수 후 양수취소로 기 등록정보를 등록취소("77")하는 경우 등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2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 시 후속업무 처리 후 양도일로 소급하여 신용정보를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713
합명 등	채권 양도 후 양도취소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제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4
합명 등	합명 등에 따라 합명 등에 의해 소멸되는 기관의 보유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합명일 동일 포함된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715

8. 기타

가. 기타 업무별 배제사항

체계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체외 허지 , 해체 및 등록취소	- 일부 상환을 전액 상환으로 처리하는 등 차외로 등록정보 해지 또는 해제 후 세동록한 경우 - 업무자으로 삭제 대상이 아닌 등록정보를 등록취소("77") 또는 등록금액·시유발생일 오류(해체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처리 후 재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조치, 단, 변동분(등록취소, 연체등 정보) 자료 통보주기 단축 전 까지는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	811
차외 등록	차외로 정보 등록 후 등록취소("77") 처리한 경우	-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였으나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 기업신용 증여 및 기업여동여친정보의 경우 500 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 개인대출정보, 체구보증정보, 연체등정보 으로 정정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 812
특수재 권입	사유발생일로 (해제와 등록에 삭제되는 경우 제외)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짐증한 경우로 서 정확한 사유발생일로 정정한 경우 - 대손상자처리 등으로 해당 세권을 변경 해 권으로 편입하면서 연체등정보를 변경 (서유코드 번체)하지 않고 특수재권으로 신규 등록한 후 기 등록된 연체등정보 또는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증인 연체등정보를 등록 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13
	체무의 존재를 다루는 소각·제거되어 연체 등정보를 등록취소("77")한 경우	- 소송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소장 송달일(원고가 제권자인 경우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척증 판결 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척증 판결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816
체무부존재 소송	체무의 존재를 다루는 소각·제거되어 개인 대출정보 또는 체무보증정보를 등록취소 ("77") 하거나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정정한 경우	- 손수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척증 판결 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척증 판결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 소송·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또는 등록취소("77")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817 818
*	최종판결확정일 : 제1심 및 학소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판결청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 주가 경과한 날)", 상고심의 경우 "판결청문을 송달받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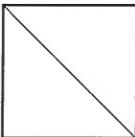
거래취소	배제 내용	배제 요건	분류 코드
- 고객이 약정 취소 또는 입금 취소를 통해 해지 또는 등록취소("77") 하거나 고객이 대출금 회수를 취소하여 재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819	
- 고객이 입금 취소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나. 청미한 사항

체계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개인대출정보의 또는 체무보증정보의 전액이 1000원 미만이었다가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1		
신규카드의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 카드의 현금서비스 정보로 등록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2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를 개인대출로 등록 하거나 그 개인대출을 신용공여로 등록 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3		
개인대출정보를 체무보증정보로 등록 하거나 체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4		
개인대출정보 또는 체무보증정보를 해지 하거나 등록해지 또는 등록취소("77")하는 경우(체 무보증정보("77")한 경우도 포함)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5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6		
외국법인 해산·歇業법인 등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보증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7		

다. 기타 사항

체계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기타 사항	상기 배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사 - 유예기간은 상기사항에 준하여 적용	- 관련 증빙 확인 후 배제 999	



번 호	회 의 차 수	일 자
제 3 호	제2015 - 5차	2015. 9. 24.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24. (제2015 - 5차)	

의 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요 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적립금 사용(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과 관련하여
동 사무국의 연말까지의 운영경비가 기 의결한 별도적립금 사용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입과 같이 부족예산에 대한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②을 의결하고자 함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15.9.12)에 따라 '16년 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15.4.24)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무국이 별도로 구성운영('15.4.6)

2) 기 의결한 금액의 80% 내외 소진후 연말까지 소요예산 부족 판단시 추가
의결기로 함(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

붙 임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1부.

2. 통합사무국의 신용정보협의회 부의 요청 문서(종신통 15-061,
'15.8.11.) 사본 1부. 끝.

제 출 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 윤 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법 부칙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4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 락)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 4. (생 락)
5.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붙임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 개요

- 금융위원회 등^{주1)}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5. 9. 12)에 따라 '16. 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15. 4. 24)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무국도 별도로 구성·운영^{주2)}함에 따라, 통합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키로 하고, 의결금액의 80% 내외 소진 후 연말까지 소요 예산 부족 판단 시 추가 의결^{주3)}키로 함

주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예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주2) '15. 4. 6 ~ '16. 3월까지
주3) 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15. 5. 8)

–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 근거

- '15.9.2. 현재 별도적립금 사용액 : 350,286천원, 70% 소진
(세부 사용 내역 첨부1 참조)

- 9월 기준 동 금액의 88% 이상 소진 예상(통합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 추가 배정 요청 공문 참조)

□ 편성(안)

- 편성 명^{주4)}

- 통합사무국은 '15. 4. 6부터 '16. 3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변동기능성은 있으나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출범은 금년 말로 예상하고 있어 예비비^{주4)}와 기 사용을 의결한 별도

직립금^(주5)와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예산안 편성

(붙임2)

주4) 통합사무국 초기 운영비용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천만원)에서 우선 사용중

주5) 통합사무국 운영비용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직립금
(5억원) 사용중(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

3. 2015년도 별도직립금 현황 1부. 끝.

- 편성(안) : 세부내용(첨부2) 참조

- 금액 : 52,760천원 이내(2015년도 사용가능액 약 25억원 중 차감)
- 비목 :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직립금
 정비(용역비), 공공요금,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 집행(안)

- 예산안 편성, 항목간 전용, 예산집행절차 등 제2015-3차 신용

정보협의회에서 의결한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집행

가. 집행현황 : 9월 기준 예산 88.8% 소진 예상

기준 예산액	지출누계액 (9월 기준)	(단위 : 천원)	
		잔액	소진율
500,000	443,818	56,182	88.8%

나. 예산 추가예정 요청액 : 52,760천원

경비	비목	(단위 : 천원)	
		증액비	주기예산
			40,000
			910
			9,100
			2,750
			52,760

* 신출내역 상세 : 별도 참조

- 불 임 : 1. 별도직립금 추가 사용(안).
- 2. 별도직립금 현황. 끝.

첨부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비용 집행현황 1부.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직립금
추가 사용(안) 1부.
3. 2015년도 별도직립금 현황 1부. 끝.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비용 집행현황 1부.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직립금
추가 사용(안) 1부.
3. 2015년도 별도직립금 현황 1부. 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수신처 전국은행연합회장
참 조 신용정보집중점무 관련 부서장
제 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 추가제작 요청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 예산이 9월말 기준 약 88%이상
소진되어 연말까지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추가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협의회에 부의를 요청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